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

김 재 엽*·이 서 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개정방향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화나 치료를 법안이 법안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친고죄의 폐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성폭력의 처벌, 피해자 전담 여성경찰관의 활용,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방안, 상담소 업무의 세부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조사와 심리에 있어 성폭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고 참작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는 증가하는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989년 한해 동안 약 25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여성들은 일생동안 한가지 이상의 성폭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력을 경험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성폭력의 상당부분을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은 청소년의 성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다. 얼마전 지방의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네 어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했으며, 그 가해자들이 고소되는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실제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에 의하면 89년 9월부터 90년 9월까지 성적인 피해, 즉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 중에서 한가지의 피해라도 당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비율은 37.8%로 10명당 약 4명꼴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성에 대한 금기가 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문화에서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의 은폐율이 높아 실제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가해자에 있어서도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범죄백서’(법무연수원, 1991)에 따르면, 실제로 1990년의 경우 강간범의 3분의 1을 넘는 36.0%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성폭행에 있어서도 가장 심한 경우인 강간의 경우 16세에서 20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피해와 가해에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의 단면이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1992년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정부내 제2정무장관실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후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내리고, 국가적 차원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였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7년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올바른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나날이 증대하는 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현행 성폭력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강요된 키스나 신체 일부분의 애무에서부터 강간미수와 강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994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위의 강제성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성폭력이란 이러한 강제적인 성적행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III.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

현행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특별법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어 그 효과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성폭력특별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보완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성폭력특별법 목적의 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 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신장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특별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이 법안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 동시에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화 내지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교화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못지않게 교화나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에 교화나 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가해자를 교화시키며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신장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폭력의 정의에 컴퓨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구체화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서등의 반포등)·제244조(음서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중략)...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현행 특별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로 다양

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다. 최근 PC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포르노나 음란통신 등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에 컴퓨터를 통한 성폭력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14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로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14조에서 처벌조항으로 들고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성폭력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컴퓨터 통신에 음란내용 소셜·수기 개설하는 행위
- ② 컴퓨터 통신에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 ③ 컴퓨터통신 대화방에서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하는 행위
- ④ 음란물에 출연 또는 관여하는 행위
- ⑤ 음란물 제작시 청소년을 이용하는 행위

특히 여기서 음란물 제작에 출연·관여하거나 음란물을 또는 제작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의무 재규정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 제 2항 또는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특별법 제30조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에 대한 조항을 보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대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국가와 지방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최소 경비 보상

제33조 (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를 입고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장단기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협력하는 데 따른 비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진단서 발급 등 증거수집을 위한 비용과 치료비 등이 필요하게 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처럼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시간과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33조는 담당의료기관의 지정과 그 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의 취지가 심각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증거확보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친고죄항의 폐지

제15조(고소)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4조) 등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다 중범죄(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상 등)는 비친고죄로, 보다 경미한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고죄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보호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사실이 한층 더 은폐되거나 가해자들이 가중된 폭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혹은 이를 역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할 가능성이 높게 만든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자를 확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¹⁾ 예를 들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인 경우 현장에서 경찰이 목격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시키기 어렵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러한 법 집행상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경우 음란물에 접하는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한 예는 극히 드물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대화나 청소년 유혹 등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으면서도 성폭력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시하는 기구나 시민단체 등에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1)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 127.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그 사실을 고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감시기구나 시민단체 및 발견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가해자치료 전문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보호관찰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 방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보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이 법안의 주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 동시에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화 내지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호관찰만을 명하고 있을 뿐 보호관찰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어떠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보다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해자의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없다. 제16조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관찰법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에 대한 세부적 사항의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세부적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해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치료 전문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7. 성폭력 피해 조사 및 심리에 여성경찰 배치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심리에 있어 일반범죄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로 그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수사관의 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범집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집단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이 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성폭력은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우리 문화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피해자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범집행기관에서 피해자와 남성 담당자와의 대면은 피해자에게 안심과 격려가 되기 보다는 또다른 긴장과 수치심으로 몰아넣게 할 가능성이 많다.²⁾ 이로 인해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되풀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편견이 여과되지 않고 표출될 때, 그렇지 않아도 신뢰의 위기를 겪은 여성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더하며 앞으로는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교훈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여성경찰의 활용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성폭력피해자의 조사 및 심리에 여성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보다 쉽고 저항감없이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담당하는 여성경찰에 대한 사전 성폭력 예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경찰의 배치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검찰의 자질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서는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 「제 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 129.

8. 조사와 심리 조항의 전문가 의견조항 추가

현행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민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성폭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경찰제의 배치와 수사관들의 교육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에만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문제나 성폭력문제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사와 심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사와 심리의 방침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조사와 심리의 방침으로는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성폭력방지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두면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청소년전문가, 성폭력전문가등에게 성폭력행위자의 정신상태와 심리상태, 성폭력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조회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 보완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피해상담과 보호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해상담을 담당하는 곳은 상담소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담소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및 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담소에는 성폭력전문가를 두고 성폭력사건의 발생시 초반부터 개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성폭력전문가는 해당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 성폭력치료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건 발생시 경찰과 함께 보고서에 전문가의 의견을 명시하도록 하고, 둘째,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다시 발견되거나 확인된 사항을 정기적인 보고서로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발생시 경찰의 보고서 작성에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초기에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발생후부터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경우에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 형사절차에서 경험하게 되는 몇번이고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공포감과 보복의 위협, 형사절차가 주는 압박감과 불안감이 그 대표적인 고통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상담소의 성폭력전문가의 원조가 반드시 수반되어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특히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형사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심리적·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심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폭력전문가에 의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상담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단체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및 직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담소에서는 학교 및 직장과의 연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 상담소에서 모든 학교나 직장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학교교사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담소의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

10. 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법에서는 상담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폭력의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상담소의 기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소는 피해자의 치료 및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및 성폭력방지를 위한 홍보업무와 연구조사 업무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때 성폭력방지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건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중앙에 중앙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1.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삭제

제32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 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상담이나 보호시설 등에 있어 유사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통제와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생적인 민간단체의 발생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³⁾ 왜냐하면 피해의

종류와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은 사례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상담, 보호기관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각 유형에 따른 다양한 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사명칭 단체의 폐해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폭력특별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의 열한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에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치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교화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못지않게 교화나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에 교화나 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내용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최근 PC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포르노나 음란통신 등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에 컴퓨터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청소년에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0조에서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대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3)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 『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자료집』, p. 135.

넷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를 입고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장·단기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협력하는 데 따른 비용도 적지 않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처럼 청소년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시간과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신고에 있어 신고죄항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 신고죄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 보호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 사실이 한층 더 은폐되거나 가해자들이 가중된 폭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혹은 이를 역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할 가능성이 높게 만든다. 따라서 성폭력의 일부 형태에 대해 신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화 및 치료 시설의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만을 명하고 있을 뿐 보호관찰시 어떠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보다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더구나 성폭력범죄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는 전문적인 개입이 더욱 요청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해자의 교정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치료 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일곱째, 성폭력 피해 여성의 조사 및 심리과정에 여성경찰과 같은 전담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여성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수사과정이나 법집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집단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이 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서 피해자와 남성 담당자와의 대면은 피해자에게 안심과 격려가 되기 보다는 또다른 긴장과 수치심으로 몰아넣게 할 가능성이 많다. 여성전담경찰의 확보와 활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조사와 심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참작에 대한 조항이 없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사와 심리에 있어 성폭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고 참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상담소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상담소의 업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전문가의 배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제공,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열번째, 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소는 상담 및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방 및 관리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한번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여건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상담소에 대한 통제와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의 단체의 피해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수립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가시적이지 못하며 우리사회의 성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성폭력은 최근 심각도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화는 법률을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을 포함한 제반 대책의 체계화가 이루어져 성폭력의 예방과 처벌 및 치료를 균형있게 실시할 경우에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재엽(1996),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제정의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서안 전문가간담회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 (1996),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제정의 방향”, 「신한국당,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 청회자료집」.
- (1996), “가정폭력의 이해와 방지법”, 「자유민주당,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자료집」.
- (1996),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제정의 방향”, 「국민회의,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 청회자료집」.
-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 「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ammer Jalna & Mary Maynard(1987),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N.J. : Humanity Press International, Inc.
- Warner Carmen Germaine(ed.)(1980), *Rape and Sexual Assault : Management & Intervention*, Maryland : An Aspen Publication.
- Finkelhor D. (1986),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Sage Publication.